

## EU 반덤핑법에 관한 소고

김도형\*

### <목 차>

I. 서론	IV. EU와 우리나라의 반덤핑제도 비교
II. 이론적 배경	1. 반덤핑제도의 운영기관의 비교
III. EU의 덤핑법의 의의	2. 반덤핑제도의 운영현황의 비교
1. EU 통상법의 개요	V. EU의 반덤핑제도의 문제점
2. EU의 반덤핑법의 법적 고찰	1. 비대칭적 가격비교의 문제점
3. EU의 반덤핑법의 특징	2. 우회덤핑방지 조치의 문제점
4. EU의 반덤핑제도를 이용한 통상 정책	참고문헌
	Abstract

### I. 서 론

덤핑은 18세기 말경부터 영국의 제조업자들이 미국의 신생기업들에게 피해를 야기시키면서 일부 국가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19세기 말 무렵부터 덤핑으로 인한 국가 간의 논란이 심화되자, 각국은 덤핑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반덤핑법’을 제정하기 시작하였다. 역사상 최초로 반덤핑제도를 법제화한 국가는 1904년 캐나다이며 곧이어 호주와 뉴질랜드가 뒤따랐고, 1921년까지에는 미국, 프랑스, 영국 등에서도 반덤핑법이 실시되었다. 이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대응조치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즉, 19세기 후반 이래 산업화의 물결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무역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는 한편 당시의 주된 무역정책 수단인 관세제도는 유연성이 적어서 이러한 피해에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어 다른 정책 수단이 필요했던 것이다.

반덤핑법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은 1920년대초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으로부터 고조되기 시작하였으며, 1920년대 국제연맹이 바이너(J. Viner)에게 의

\*홍익대학교 무역학과 박사과정, 강사

되한 “덤핑 및 가격차별에 관한 연구”가 그러한 관심의 한 예이다. 이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된 것은 1933년의 세계경제회담(World Economic Conference)이었다. 그러나 국제연맹은 이에 관한 합의나 협정체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1984년 제정된 미국의 Wilson법을 제외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반덤핑법을 제정한 최초의 국가는 캐나다(1903)이며, 그 뒤 뉴질랜드(1905), 호주(1906), 남아프리카공화국(1914)등이 개별적으로 반덤핑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1916년에 제정된 세입법 801조(Revenue Act of 1916)를 통하여 소위 약탈적 덤핑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할 것을 규정하였다.

1912년 들어서 새로이 반덤핑법을 제정 또는 개정을 하여 반덤핑관세 부과와 전제조건으로서 피해발생 요건 등을 규정하였는데, 예를 들면 영국의 산업구제법(Safeguarding of Industrial Act), 호주의 산업보호법(Industries Prevention Act), 뉴질랜드의 반덤핑법 그리고 미국의 1921년 반덤핑법(Anti-dumping Act of 1921) 등이다.<sup>1)</sup>

덤핑과 관련된 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최초로 등장하게 된 것은 1920년대 국제연맹이 덤핑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지만 GATT체제에서 국제적인 규정으로 구속력을 가지게 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였다. 즉, 1948년 1월 1일에 효력이 발생된 GATT의 제6조에서 반덤핑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이에 의하여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현재 반덤핑 규칙의 핵심이 되고 있다.

## II. 이론적 배경

덤핑에 대한 연구는 덤핑의 발생원인에 대한 바이너(Jacob Viner, 1923)의 연구를 시작으로 반덤핑법의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sup>2)</sup> Viner(1923)의 연구는 독점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국가의 기업이 보다 경쟁적인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국가에 덤핑수출을 한다고 파악하였다.

Viner(1953)는 그 후 전통적인 무역전환효과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무역전환

1) 최홍배, “EC 반덤핑 실행의 법적문제 : Council Regulation (EC) No.2423/88을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2) 덤핑의 발생측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 환율변동에 의한 덤핑발생을 연구한 Wares(1977), 수요의 불확실성에 의한 덤핑발생을 연구한 Either(1982), 한계비용 아래서의 덤핑발생에 대한 연구인 Davies and Mcgunness(1982), 독점적 시장구조를 전제로 덤핑발생에 대하여 연구한 Brander and Krugman(1983), 경기호황기의 덤핑발생에 대하여 연구된 Clarida(1993) 등이 있다.

효과는 관세동맹이 형성되면 관세동맹에 의하여 동맹국가의 관세는 없어지지만 비동맹국의 관세는 계속 유지되므로 가장 효율적인 공급원으로써 선택되어야 할 비동맹국의 수입원이 동맹국내의 수입원으로 전환되는 효과를 말한다. 덤핑제소로 인한 무역전환효과도 같은 논리로 제3국에 발생된다. 즉 덤핑제소로 인하여 일부 수입원인 피제소국으로부터 수입이 규제되면 위촉된 수입액의 일부는 제소국 업체에 의하여 충당되지만 일부는 규제되지 않은 수입국인 제3국에 의하여 충당됨으로써 제3국의 수입액은 증가되는 덤핑제소로 인한 제3국의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sup>3)</sup>

Dale(1980)은 그의 연구에서 덤핑제소의 조사기간 동안 피제소국가로부터 대미 수출이 감소하는 효과를 조사효과(investigation effect)로 명명하였다.<sup>4)</sup>

덤핑제소에서 조사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제소자는 덤핑제소를 통하여 피제소국의 수입량 감소나 수입제품의 가격인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 Dale(1980)은 수출업자의 가격책정행위와 수입업자의 위협기피 행동에서 조사효과의 발생원인을 찾았다.

Prusa(1992)는 덤핑제소의 영향은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거나 제소자와 피제소자간의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제소철회(withdrawn)가 되는 경우에만 수입규제효과가 있다고 하였다.<sup>5)</sup>

그는 피제소자가 제소된 덤핑조사에서 무협의 판정을 받는 경우 덤핑제소는 피제소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위협효과(in terrorem effect)”가<sup>6)</sup> 존재하지 않다고 본다.

Prusa(1992)는 1980년과 1981년에 덤핑제소된 제품들의 총수입액을 분석한 결과 위협효과가 존재하지 않음을 제시하였다. 반덤핑관세부과 판정을 받거나 제소철회가 되어진 경우 피제소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덤핑제소된 년도(1980년과 1981년에) 비하여 덤핑제소된 다음연도(1981년과 1982년)에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부정판정을 받은 제품들의 수입액은 덤핑제소된 년도에 비하여 덤핑제소된 다음연도에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Staiger and Wolak(1994)는 덤핑제소의 영향에 대한 정교한 계량경제모형을

3) Viner, J.(1953), "The Customs Union Issue", New York: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4) Dale, R.(1980), "Anti-dumping law in a Liberal Trade Order", St. Martin's Press, New York.

5) Prusa, T.(1992), "Why Are So Many Antidumping Petitions Withdraw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33, pp.1~20.

6) Prusa(1992)에서 정의된 위협효과는 "덤핑제소 그 자체로는 외국 수입업체와의 경쟁에 반하는 영향을 끼칠 수 없고, 그러므로 국내산업은 단순한 덤핑제소만으로는 외국의 경쟁업체로부터 전략적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만들었다.<sup>7)</sup> 그들의 연구는 덤핑제소가 수입업자와 국내 생산업자에게 주는 영향을 예측하고 있다. 연구결과 예비공정판정만으로도 외국기업들의 수입액의 축소를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업체들은 경쟁자인 외국 수출업자와의 가격경쟁이 심화되는 경우(price war)외국 수출업자의 가격인하 전략을 단기적으로 제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덤핑제소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이와 같이 일시적으로 경쟁을 완화할 목적으로 덤핑제소를 활용하는 제소자들을 Staiger and Wolak(1994)은 “조사를 목적으로 한 제소자(process filer)”로 명명하였다. Staiger and Wolak(1994)의 분석방법은 정교한 계량모형이기는 하나 피제소자와 제3국에 대한 덤핑제소의 영향을 측정하는 모형으로는 한계가 있다.

Prusa(1996)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반덤핑제도가 유발하는 효과에 대하여 몇 가지 정형화된 주장을 제시하였다. 그 중의 하나가 위협효과인데, 반덤핑제소가 이루어지면 피제소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감소하고, 이러한 효과는 덤핑률이 높은 산업일수록 크다는 것이다. 또한 조사 신청이 일단 제시되면 조사기간 중 부정판정이 내려진 사례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경우 피제소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는 1980년부터 1988년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428건의 반덤핑제소 사례를 바탕으로 반덤핑제소 후 5년 동안의 덤핑수출의 혐의가 있는 피제소국과 정상수출을 하는 이외의 나라로부터의 수입변환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기인한다.

### III. EU의 덤핑법의 의의

#### 1. EU 통상법의 개요

EU의 대외통상규제법은 ① 수출규제법과 ② 수입규제법으로 그리고 ③ 수량규제와 ④ 관세규제로 각각 나누어 볼 수 있다. 또 불공정무역을 규제하는 법과 공정성 여부에 관계없이 발동되는 조치로 구분된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수입규제조치로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수출자율규제조치, 신통상정책수단, EEC조약 제11조에 의한 간접 수입제한조치, COCOM에 의한 수출

7) Staiger, R.W. and F.A.Wolak(1994), “Measuring Industry Specific Protection : Antidumping in the United States”,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 Microeconomics.

제한조치 등이 있고, 기타 원산지규정, 관세평가 규정 등도 통상보호조치로써 이용된다.

이러한 EU의 대외통상규제조치 중에서도 가장 널리 이용되고 중요한 것은 반덤핑규제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이르러 EU에 서는 우리나라나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수출국들의 유럽으로의 수출 상품에 대한 덤핑규제를 급격히 증대시키고 있다. EU의 덤핑제소 남발은 경제 상황적인 이유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반덤핑절차는 각 대상국별로 선별적으로 발동될 수 있는 점에서 다른 통상규제조치보다는 선호되고 있다. 만약 긴급수입제한조치는 무차별대우 원칙이 적용되어 특정국가나 특정기업의 상품만을 대상으로 할 수 없음에 대하여 반덤핑규제는 특정국가는 물론 특정기업의 상품에 한정하여 발동될 수 있어 가장 직접적인 규제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EU가 반덤핑 규제를 선호하는 또 다른 요인은 일정한 시한에 따라 조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비교적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덤핑차액을 계산해 낼 수 있다는 점이다.

반덤핑절차의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상계관세절차는 EU에서는 거의 이용되고 있지 않은데 미국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EU는 공동상업정책을 위시하여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외국정부에 대하여 수출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하는 상계관세를 부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1988년까지 EU에서 부과한 상계관세는 거의 전적으로 스페인과 브라질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한국에 대하여는 현대상선의 보조금지급에 대한 1건 정도이다.

긴급수입제한조치도 EU에서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원용되고 있다. 이는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상대국의 불공정행위에 근거하는 규제조치가 아니고 EU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를 당하는 측에서의 반발이 크고 또 보호를 요청하는 EU의 산업의 입장에서 볼 때도 입증하여야 할 피해의 정도가 덤핑보다는 훨씬 높아 절차의 이용이 번거롭기 때문이다.

또 긴급수입제한조치는 무차별원칙에 입각하여야 하기 때문에 선별적인 수입규제를 원할 경우에는 상대국과의 협상에 의하여 수출자율규제(Voluntary Export Restraints : VERs)라는 방식을 채택하면 된다. 한국에 대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한 사례는 신발류에 대한 1건이 있을 뿐이다.

EU의 통상법의 발동은 일반적으로 EU역내기업들의 경쟁력이 취약한 철강, 섬유, 가전제품, 전자부품, 사무기기 등에 집중적으로 취해져 왔다. 특히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한국의 주종 수출품목인 전자제품, 신발류, 섬유류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의 강도는 한국의 대 EU 수출이 급성장세를

보이기 시작한 지난 1987년 이래 극도로 심화되고 있다.

한국의 대 EU수출이 미미하였던 1972년부터 1980년까지 9년 동안 총 제소건 수가 8건에 불과하였으나 1981년에는 각각 6건과 4건을 기록, 2년 동안에 10건이라는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한국의 대 EU 수출이 1983년에는 30억 달러, 1984년에는 32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1987년에는 66억 달러로 급증한 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는 1989년부터 더욱 늘어나 1989년에는 8건, 1991년도에는 14건, 1992년도 15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 제소형태는 지난 1972년 이래 덤핑규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신발류에 관한 1건뿐이었으나 최근 들어 특허권침해 등 그 제소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최근에 들어 한국에 대한 EU의 통상규제조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EU에로의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기인한 것이지만, 우리 수출업체들은 일단 제소를 당하고 나면 정면대응을 피하고 가격인상약속 또는 수출자율규제를 제안하거나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경향이 있어 한국을 손쉬운 상대로 여기는 분위기가 EU 내에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sup>8)</sup>

## 2. EU의 반덤핑법의 법적 고찰

EU의 반덤핑법의 기원을 살펴보면, EU는 GATT 반덤핑 및 보조금·상계관세 협정의 영향으로 공동통상정책을 규정하고 있는 EEC조약 제 113조에 의거하여 최초로 반덤핑 및 보조금·상계관세법규인 이사회규칙을 제정·채택하였다. 이것이 1968년 4월 5일에 채택된 이사회규칙 제459/68호라고 할 수 있다. 이 후 동규칙은 1979년, 1984년, 1988년, 1996년 등 수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sup>9)</sup> 이는 본질적으로 1976년 반덤핑규약을 EC법에 흡수한 것이며, 대내적으로는 EEC 성립조약인 로마법 제113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GATT 1994 제6조<sup>10)</sup>와 1994년에 타결된 다자간 무역협상(Multi Trade Negotiation)에 근거한 WTO의 반덤핑협정에 근거하고 있다.

8) 서헌제, 통상문제와 법, 율곡출판사, 1994, pp.289~308.

9) EU통상연구회, "EU의 통상정책과 법", 율곡출판사, 2000. p.96.

10) GATT 1994 제6조의 내용은 GATT 1947 제6조가 근간이 되고 있다.

### 3. EU의 반덤핑법의 특징

#### 3.1 EU의 반덤핑법의 적용

EU의 통상정책은 EEC조약 제113조에 규정된 공동통상정책에 따라 EU기관이 통일된 원칙 위에 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EU회원국은 대외무역에 관한 정책의 결정 및 수행을 각기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런데 EC조약 제 113조에서는 덤핑이나 보조금과 같은 불공정 무역에 대한 대응조치 역시 공동체의 공동통상정책의 주요한 수단중의 하나임을 명시하고 있다. EU의 반덤핑 제도는 EU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고려하여 EU 이사회가 채택한 반덤핑조치의 시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EU 기관이 이를 통일적으로 운용하게 된다. 따라서 EU회원국들은 각기 독자적으로 반덤핑제도를 시행 할 수 없다. 다만 신규회원국으로서 EU에 가입하는 경우 특별히 허용되는 짧은 과도기간의 예외가 인정될 뿐이다.<sup>11)</sup>

EU반덤핑규정의 모든 규정은 GATT 제VI조 반덤핑규정의 실시에 관한 협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 EU반덤핑 규칙 354/96 제22조에 의하면, 현 규칙은 “일반협정(WTO협정)이 정한 의무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특별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규정과 관련되어 EU는 GATT/WTO 비회원국인 제3국에 대해서도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의 의문에 대하여, EU의 많은 전문가들이 WTO의 회원국이든 비회원국이든 간에 모든 제3국에 EU의 반덤핑규칙이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비록 EU가 승인한 조약의 의무의 효력이 당해 조약을 서명 또는 비준한 제3국에만 미친다고 할지라도 반덤핑규칙 384/96은 EU의 비회원국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WTO의 비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함께 차별 없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sup>12)</sup>

#### 3.2 EU의 반덤핑 제도의 특색

EU에서는 EU집행위원회(Commission)가 반덤핑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 할 뿐 아니라 덤핑조사 및 산업피해조사를 담당하는 등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이로 인해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의사의 불일치 및 업무의 중복을 피할 수 있는 일원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

11) 고준성, “WTO체제하에서의 미국 및 EU반덤핑법제의 분석”, 연구보고서 제410호, 산업연구원, 1998, pp.189~195.

12) 채영복, “EU반덤핑법”, 지산출판사, 2000. p.68.

덤핑 조사기법 및 행정적 자유재량에 있어서의 각국의 조사기법과 행정적 자유재량에 대해 각국마다 상이점을 가지고 있으나 EU는 덤핑조사 접근방법이 조사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조사당국만 기밀정보 접근이 가능하다. 따라서 조사담당자들에 대한 모든 외부체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덤핑조사 관련당사자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행정적 자유재량권은 미국이나 캐나다와 달리 조사당국에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EU를 자유재량이 가장 많이 피해마진분석에 있어 집행위의 재량권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피소 측에 불리한 측면이 많다.

EU의 반덤핑 관세부과에 대해서는 덤핑마진이 피해보다 큰 경우 피해마진을 고려하여 덤핑관세를 결정하는 미소관세규칙(Lesser Duty Rule)이 잘 시행되고 있다. 특히, CIF 수출가격에 대한 백분율로써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반덤핑관세는 부과시점에서 덤핑가격으로 판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수출업자로서는 불리한 반덤핑관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덤핑마진은 미국, 캐나다 및 호주와 마찬가지로 정상가격의 평균치를 계산하여 평균가격과 개별수출가격을 비교하고 평균가격 이상으로 판매된 수출은 덤핑마진 산정시, 제외시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덤핑이 없었더라도 항상 덤핑이 존재하는 것으로 계산되는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WTO에서는 정상적인 경우 덤핑마진의 계산은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가중평균 대 가중평균, 또는 거래 대 거래 기준으로 비교하여 산출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부의 덤핑마진(Negative Dumping Margin)을 인정하고 있어, 이는 덤핑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개선사항 중 하나이며, 충실히 지켜질 경우 덤핑제소건수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피해 판정은 EU의 경우 호주와 마찬가지로 산업피해관련 정보를 대외비로 처리해 왔다. 한편 덤핑수입과 산업피해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은 조사당국에 제공된 모든 관련증거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주요 선진국간 차이가 없지만, WTO의 규정에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는 덤핑수입 이외의 여타 요건들에 의한 산업피해가 덤핑수입에 의한 것으로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다른 요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관적인 판단 개입여지를 최소화하였다.



## 4. EU의 반덤핑제도를 이용한 통상정책

### 4.1 반덤핑제도와 통상정책

EU는 반덤핑제도를 강력한 보호주의 수단으로서 가장 빈번하게 이용해 왔다. EU와 반덤핑제도의 역사 EEC 비회원국의 덤핑이나 보조금으로터의 보호를 위해 최초로 반덤핑규정을 제정한 1968년부터라고 할 수 있으며, 1970년에는 처음으로 반덤핑제도가 실시되었다. 1979년에는 동경라운드에서 논의된 GATT의 반덤핑제도를 EC법에 수용하였으며, 1984년 6월에는 EC Regulation No. 2176/84를 제정하여 손해규정을 도입함으로써 EC위원회는 EC지역의 국가로부터 덤핑과 관련된 수입에 대하여 보호주의적인 통상규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987년 6월에는 반덤핑법에 우회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반덤핑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1994년 12월 22일에 ‘유럽공동체가맹국 이외로부터의 덤핑수입에 대항하는 보호에 관한 규칙’을 채택하여, 1995년 1월 1일에 발효하였다. 신 규칙은 우루과이라운드(UR)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합의된 GATT의 덤핑방지협정을 공동체법에 수용한 것이다. 또한 기존의 구 규칙하에서 현재까지 실행되어 온 EC위원회의 실무를 중시하여 조사절차의 효율화를 기하는 동시에, 상계관세제도는 별도의 EC 각료회의 규칙 No. 3284/94로 분리하였다. 그러나 3283/94는 공포 후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 폐지되고 1995년 12월 22일자 이사회규칙 384/96이 제정되어 현재 발효 중이다.

반덤핑제도는 상대국에 미치는 효과가 강력하고, 적용절차가 간단하며 그 결과가 신속하기 때문에 EU공동체 및 여타 선진국들이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덤핑제도는 비교적 자의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부과될 뿐만 아니라, 반덤핑조사가 행하여져 실제적으로 판단기준에 따라 부과될 뿐만 아니라, 반덤핑조사가 행하여져 실제적으로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덤핑혐의를 벗어나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비록 무혐의나 무피해 판정을 받더라도 반덤핑조사를 받은 사실 자체만으로도 수입업자들은 해당제품의 수입을 꺼려하게 되므로 수출업자들에게는 상당한 물질적·심리적 피해를 주게 된다.

### 4.2 EU의 반덤핑조치에 대한 활용

최근 EU가 역내시장의 방어수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수입제한조치는 반덤핑조치이다. 실제로 최근 수년간 EU는 WTO회원국 중 가장 적극적으로 반덤핑조치를 무역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EU가 반덤핑조치를 많이 활용

하고 있는 것은 여타 무역규제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용하기가 쉽고 또한 수입제한의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WTO 무역협정 발효이후 전 세계적인 관세인하에 따라 EU의 공동관세도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보호무역수단으로서의 관세의 중요성이 떨어졌고 또한 수량제한조치 역시 WTO협정에 의해 부과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한편 반덤핑조치는 조사개시만으로도 그 결과에 상관없이 변호사, 회계사 비용 등 대응비용이 과다하고 제품의 이미지손상, 현지 수입선의 수입기피 현상 등 수출위축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피소기업의 수출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sup>13)</sup>

반덤핑조치의 원래 목적은 수입을 제한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공정한 경쟁환경을 실현시키는데 있다. 즉, 반덤핑조치는 수출국의 WTO협정에 금지되어있는 덤핑행위 즉, 불공정무역행위를 자행함으로써 수입국의 국내산업의 피해를 입거나 또는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상품에 덤핑을 방지하는 관세 즉,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덤핑의 존재사실은 물론이고 그러한 덤핑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나 피해위협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1995년 발효된 WTO반덤핑협정에서도 반덤핑조치발동을 위한 사실입증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UR협상의 타결에 따라 1994년에 새로이 개정된 EU의 반덤핑법에서도 EU가 반덤핑규정을 수입상품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덤핑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둘째, 덤핑으로 인해 EU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고

셋째, 제안된 덤핑방정책이 EU의 공동이익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sup>14)</sup> 그러나 EU의 반덤핑법은 덤핑마진의 산정, 조사절차, 덤핑관세부과결정 등과 관련하여 여전히 일방적이고 불투명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덤핑이라는 불공정행위의 규제보다는 오히려 역내 특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의 수단으로 남용될 개연성이 많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게다가 EU의 반덤핑조치는 수출 대 상국별, 산업별로 편파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역외국가들의 수출

13) 반덤핑 규제에 대해서는 김승민·류건우, "EU의 섬유류 수입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프랑스학회 『한국프랑스학논집』, 제34집, pp.33~34.

14) 이종원(외), "국제지역경제론", 비봉출판사, 1996, p.97.

업체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sup>15)</sup>

EU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총 116건에 달하는 반덤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기간동안 EU의 반덤핑조사 발동은 한국(21건), 중국(24건), 인도(23건) 등 개도국과 신흥공업국에 집중되고 있다(<표 1> 참고). 한편, 반덤핑제소가 가장 많이 부과되는 산업은 철강, 화학, 섬유 및 의류, 전자 등이다.<sup>16)</sup>

<표 1> EU의 반덤핑 조사 건수

	1997	1998	1999	2000	1997~2000
한 국	3	7	9	2	21
인 도	6	7	7	3	23
중 국	5	1	12	6	24
일 본	2	-	4	1	7
기타 36개국	29	14	54	19	116

출처 : EU Commission 이종화·박순찬, “EU확대와 한국의 대응전략: CGE모형분석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울, 2001, p.51에서 재인용.

한편 최근 EU는 반덤핑규제와 더불어 상계관세조치의 부과도 점점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는 상품의 생산 또는 수출과정에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보조금(subsidy)을 받은 외국산 제품의 수입으로 동종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수입국 정부가 부과하는 할증관세를 의미한다. 보조금의 지급은 수출촉진이나 수입대체와 같은 무역왜곡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보조금지급을 불공정무역행위로 간주하고 보조금효과를 상계시키기 위한 상계관세를 발동시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상당수 국가들이 자국산업의 피해를 방지한다는 명목 하에 일방적으로 상계관세를 활용하기 시작하자 이를 둘러싼 무역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WTO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에서는 수입국이 상계관세를 보호무역적 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계관세 발동요건을 강화하고 있다.<sup>17)</sup>

15) EU반덤핑규제의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종화, “한·EU 주요통상현안과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7, pp.30~40과 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 1998, pp.38~40.

16) 박범순, “최근 세계통상환경의 변화와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1997. 7. 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 2000; 산업자원부, “외국의 무역·투자장벽사례집”, 2007. 7. pp.319~320.

17) 김승민, 전계서, 2002. pp.111~134.

## IV. EU와 우리나라의 반덤핑제도 비교

### 1. 반덤핑제도의 운영기관의 비교

#### 1.1 EU

EU에서는 EU집행위(Commission)가 반덤핑절차의 개시여부를 결정할 뿐 아니라 덤핑조사 및 산업피해조사를 담당하는 등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의사의 불일치 및 업무의 중복을 피할 수 있는 일원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구체적인 EU의 반덤핑 제도 운영기관은 EU집행위원회 통상총국이다. 이곳의 기능은 산업피해를 조사하고 구제하는 조치를 결정하거나 무역장벽을 조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기관은 독립적인 행정조직의 성격을 가진다.

#### 1.2 우리나라

우리나라 반덤핑제도의 운영은 무역위원회와 재정경제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1989년 무역위원회가 설립된 이래 지난 1995년까지는 관세청이 덤핑여부를 조사하고 산업피해 판정은 무역위원회가 분장하는 이원화된 체제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1996년에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무역위원회가 덤핑사실의 존재 및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여부 등 일반적 업무를 조사·판정하는 일원화된 체제를 도입하였다. 무역 위원회는 산자부 소속의 독립된 행정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표 3> 한국과 EU의 반덤핑관세제도 운영기관 비교

		EU	한 국
기 구		EU집행위원회 통상총국 (DG Trade) C국 및 E국	무역위원회(KTC)
성 격		행정조직	산자부소속 독립행정위원회
위 원	수	20명	7명
	임기	5년(연임불가)	3년(연임가능)
인 원		약 250명	52명
기 능		· 산업피해조사 및 구제조치결정 · 무역장벽조사	· 산업피해조사 및 구제건의 · 국제무역제도 및 분쟁사례 · 불공정수출입 행정조사

EU통상총국의 위원은 20명으로 미국이 6명, 한국이 3명인 것에 비해 많은 임원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원은 약 250명이다. 우리나라 무역위원회 인원은 52명 수준이다. 이상의 내용을 비교하면 <표 3>과 같다.

## 2. 반덤핑제도의 운영현황의 비교

### 2.1 반덤핑판정의 조사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10조에 따라 외국의 상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음이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상 상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일반관세 이외에도 덤핑으로 말미암아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당국이 인정해야 반덤핑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데, 다만 반덤핑제도의 실제운영에서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 여부가 독립적인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관세법 시행령 제4조의 7에 따르면 무역위원회가 실질적인 피해 등을 조사·판정할 때에는 실질적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덤핑수입과 산업피해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은 조사당국에 제공된 모든 관련증거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주요 선진국간 차이가 없지만, UR협정안에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덤핑수입 이외의 여타 요건들에 의한 산업피해가 덤핑수입에 의한 것으로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여타 요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관적인 판단 개입여지를 최소화하고 있다.

덤핑 조사기법 및 행정적 자유재량에 있어서는 각국의 조사기법과 행정적 자유재량에 대해 각국마다 상이점을 가지고 있으나 EU는 덤핑조사 접근방법이 조사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조사당국만 기밀정보 접근이 가능하다. 따라서 조사담당자들에 대한 일체의 외부체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덤핑조사 관련당사자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행정적 조사당국에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EU는 자유재량이 가장 많고 피해마진분석에 있어 집행위의 재량권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피소 측에 불리한 측면이 많다.

## 2.2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특정 수입상품이 수출국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상가격과 덤핑(수출)가격을 조사·비교하여 덤핑조사는 이루어진다. 이때 정상가격은 당해 상품의 공급국에서 소비되는 동종상품의 동 상거래가격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당해 상품의 물리적 특성, 판매수량, 판매조건, 과세상의 차이, 거래단계의 차이, 환율변동 등이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를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에서 조정한 뒤 비교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해관계인이 물리적 특성, 판매수량 및 판매조건에 차이로 가격조정을 요청할 때에는 그러한 차이로 인하여 시장가격이나 제조원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제1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산업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인상률과 덤핑률을 비교하여 덤핑방지관세율을 정한다(lesser duty rule). 즉, 덤핑방지관세는 그 부과목적이 재정수입 확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구제에 목적이 있으므로 산업피해구제수준이 조사된 덤핑률보다 낮으면 그러한 구제수준을 반덤핑관세율로 하고, 산업피해 구제수준이 덤핑률보다 높으면 덤핑률을 덤핑방지관세로 하고 있다.

반면 EU의 반덤핑 관세부과에 대해서는 덤핑마진이 피해보다 큰 경우 피해마진을 고려하여 덤핑관세를 결정하는 미소관세규칙(Lesser Duty Rule)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CIF 수출가격에 대한 백분율로써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수출업자로서는 불리한 반덤핑관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덤핑마진은 미국, 캐나다 및 호주와 마찬가지로 정상가격의 평균치를 계산하여 평균가격과 개별수출가격을 비교하고 평균가격 이상으로 판매된 수출은 덤핑마진 산정시 제외시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덤핑이 없었더라도 항상 덤핑이 존재하는 것으로 계산되는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다.

## V. EU의 반덤핑제도의 문제점

EU 반덤핑 규정의 문제점은 크게 비대칭적 가격 비교와 우회덤핑방지 제도의 문제점으로 분석할 수 있다.<sup>18)</sup>

## 1. 비대칭적 가격 비교의 문제점

현재 EU 반덤핑규칙 384/96 제2.1조 A는 GATT 제VI조에 의거하여 WTO 반덤핑협정에서 규정한 정상가격산출방식의 대부분을 그대로 도입하였다. 그러나 WTO 반덤핑 협정과는 달리 EU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국영무역국가의 경우에 적용되는 산출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즉, 전자는 주로 시장경제체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정상가격을 그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는 데 반해, 후자는 비시장 경제체제국가(국영무역국가)와 관련된 정상가격의 산정 기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덤핑판정의 기초가 되는 정상가격의 산정 방법과 개개 사안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sup>19)</sup>

따라서 EU의 반덤핑법은 1994년 12월 UR협상의 타결 시 WTO 반덤핑협정의 발효로 1994년 전면적으로 개정되었으며 그 후에도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으나, 여전히 제도자체 및 운영전반에 걸쳐 비합리적이고 불투명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sup>20)</sup> 반덤핑관련 WTO 협정 제1부 제2조에서, 일반적으로 덤핑이라는 것은 “어느 한 국가로부터 다른 국가로 수출된 상품의 수출가격이 수출국에서 소비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동종상품에 대한 정상적 거래에 있어서의 비교 가능한 가격보다 낮을 경우 당해 상품이 덤핑된 것으로, 즉 어떤 상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타국의 상업영역에 도입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21)</sup>

그러므로 수출가격은 수출국으로부터 공동체내로 수출을 위하여 판매될 때에 해당상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한 가격이라 할 수 있으며, 수출업자가 독립구매업자(independent importer)에게 판매한 가격이 수출가격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서로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는 수입품이 최초의 독립구매업자에게 재판매된 가격을 기초로 구성수출가격(constructed price)을 산정한다. 그러나 수출시장과 국내시장에서의 거래단계의 가격차이를 조정하지 않을

18) 장흥훈·조우길, “EU의 반덤핑 제도에 관한 한국의 정책적 대응방안”, 국제상학 제18권 제2호, 2003. pp.270~274.

19) 채형복, “덤핑 결정기준으로서의 정상가격에 관한 법적 고찰”, 아주대학교 논문집, 1999, p.3.

20) 이종화, “한-EU 주요통상현안과 대응방안”, 자료논문 97-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pp. 32~34.

21)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a product is to be considered a being dumped, i.e., introduced into the commerce of another country at less than its normal value, if the export price of the product exported from one country to another is less than the comparable price,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for the like product when destined for consumption in the exporting country(이 협정의 목적 상, 일국으로부터 타국으로 수출된 상품의 수출가격이 수출국에서 소비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동종상품에 대한 정상적 거래에 있어서의 비교 가능한 가격보다 낮을 경우 당해 상품이 덤핑된 것으로, 즉 어떤 상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타국의 상업영역에 도입된 것으로 간주된다).

경우 불균형적인 가격비교가 이루어지는데. 이 같은 EU반덤핑 관행이 집중적인 비판의 표적이 되고 있다.

## 2. 우회덤핑방지 조치의 문제점

우회덤핑은 반덤핑관세 또는 조치의 대상이 되는 제품에 대해 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취하는 일련의 조치 또는 행위를 말한다.<sup>22)</sup> 하지만 1979년 동경 라운드의 결과 채택된 GATT반덤핑 협정은 우회덤핑과 관련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EU, 미국 및 캐나다 등의 다수의 선진국들은 개별적으로 우회덤핑을 규제하기 위한 법규를 제정하였다. 그들은 만약 수출자가 수입국 영역내 부품 및 생산공장을 설립하거나 혹은 상품의 생산을 동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제3국이나 수입국으로 이전함으로써 반덤핑관세의 납부의 회피를 의도한다면 이러한 우회행위는 규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23)</sup>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진행 중이던 1987년 6월 EU는 반덤핑조치의 우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스쿠루드라이버 규정(a screwdriver regulation)”이라 불리는 우회덤핑방지규정 1761/87을 채택하였다. 이 규정에 의하면, 다음의 세 가지 요건, 첫째, 조립 및 생산이 관련성이 있거나 연합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행해지거나, 둘째, 조립 또는 생산이 덤핑조사의 개시 이후에 착수되거나 상당량이 증가되었으며, 셋째, 반덤핑관세의 대상이 된 제품의 수출국을 원산지국으로 하는 사용부품이나 재료의 가치가 기타 모든 사용부품 또는 재료의 가치를 적어도 50% 이상 상회한 경우에는 반덤핑 관세를 회피했다고 간주되었다.

그리고 EU의 신반덤핑규칙 384/96은 우회덤핑에 대한 두 가지 상이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sup>24)</sup> 즉 첫째, 고전적 혹은 조립형 우회덤핑의 개념에 근거한 것으로 향후 우회덤핑방지조치는 공동체 혹은 제3국을 발송지로 하는 동종 상품의 수입에도 적용될 수 있다. 둘째, 위의 개념으로도 규제할 수 없는 우회덤핑행위에 대한 개념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그 절차 면에서 수입의 등록의무 및 반우회증명서의 제시의무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우회덤핑조항과는 별도로 관세규정은 계속 적용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는 등 기존의 관련 규정에 비하여 불명확한 제 요소에 대한 실정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22) 김영무·조무연, “반덤핑 위회방지조항에 관한 소고: 유럽연합의 새로운 반덤핑규정을 중심으로”, 『법과 경제 : 미완의 자화상(하)』, 1996, p.63.

23) 채형복, 「EU반덤핑법」, 지산, 200, p.120.

24) 채형복, 전게서, pp.129~130.



심사체계를 한층 강화하였다.

여기서 신 규칙의 우회방지 규정상 우회(circumvention)의 정의에는 본질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① 반덤핑관세의 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달리 “충분하고 적격한 이유나 경제적 근거”가 없음에도 제3국들과 공동체간의 무역패턴에 있어서 변화가 있어야 하고, ② 관세의 구체적 효과(remedial effects)가 동종제품의 가격 및 수량의 관점에서 손상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③ 동종 또는 유사제품에 대한 확정된 정상가격과 관련하여 덤핑의 증거가 있어야만 할 것 등이 그것인 바 그러한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될 경우 우회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처럼 자국기준을 적용한 과도하고도 무분별한 우회덤핑조사 개시는 정당한 국제무역과 투자의 흐름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sup>25)</sup>

우회덤핑방지규정(anti-circumvention)은 UR 협상시 합의에 실패한 부분이므로 새로운 합의가 도출되기 전에는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EU가 동 조항을 법규 내에 포함시킨 것은 성급한 조치이며 이는 역외국으로부터 반덤핑 우회목적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직접투자를 저해하고 부품 등록 등과 같은 막대한 행정비용을 수출국에 부담시키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25) 이와 관련하여 1911. 12. Dunkel 초안에 포함되었던 우회방지 조치가 WTO 반덤핑협정에 포함되어 규정되지 못하게 된 이유에 관한 상세한 논의에 관해서는 Holes, “Anti-Circumvention under the European Union's New Anti-Dumping Rules”, 29(3) Journal of World Trade, 1995, pp.164~165.

## 참고문헌

## [국내문헌]

1. 고준성(1998), “WTO체제하에서의 미국 및 EU반덤핑법제의 분석”, 연구보고서 제410호, 산업연구원.
2. 고준성(1999), “우리나라 반덤핑법상 재심제도 및 체제정비 방안”, 무역위원회.
3. 관세법 제56조 및 관세법 시행령 70조.
4. 김승민(2002), EU 공동통상정책의 구조와 특징,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학논총 7권.
5. 김승민·류건우(2001), “EU의 섬유류 수입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프랑스학회, 『한국프랑스학논집』, 제34집.
6. 김용규(1995), “WTO체제의 반덤핑 개세제도와 한국의 대응방안”, 경제논단 34권 3호,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7. 김장 법률사무소(1994), “UR덤핑방지협정의 축조해석, 그 영향 및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무역협회.
8. 김정훈(1995), “반덤핑관세의 경제이론적 배경”, 세종연구소.
9. 김태현(2003), “한국의 對EU 통상현안과 문제점”, EU학연구 제8권 제1호, 한국EU학회.
10. 김한진(2001), “덤핑·반덤핑”.
11. 김한진(2004), “외국물품수입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반덤핑조치가 국내 동종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2. 무역위원회(2003), “무역구제제도 운영자료집”.
13. 박노형(1999), “우리나라의 반덤핑법상 이의제기 절차도입 및 법제화 방안”, 수시정책연구과제 99-3, 고려대학교 통상법 연구센터.
14. 박범순(1999. 7), “최근 세계통상환경의 변화와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15. 산업자원부(2000. 7), “외국의 무역·투자장벽사례집”.
16. 서헌제(1994), 통상문제와 법, 율곡출판사.
17. 외교통상부(2000), “외국의 무역·투자장벽사례집”.
18. 외교통상부(1998), “외국 산업자원의 통상환경”.
19. 외교통상부(2000), “외국의 통상환경”.

20. EU의 제반 조약 및 문서.
21. EU통상연구회(2000), “EU의 통상정책과 법”, 을국출판사.
22. 이주윤·고상범(2001), “WTO 체제 하의 반덤핑 관련 분쟁사례에 대한 분석 및 향후 한국에의 교훈” 법학연구 제11권 제4호 통권 제13호, 연세대학교법학연구소.
23. 이종원 외(1996), “국제지역경제론”, 비봉출판사.
24. 이종화(1997), “한·EU 주요통상현안과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5. 장흥훈·조우길(2003), “EU의 반덤핑 제도에 관한 한국의 정책적 대응방안”, 국제상학 제18권 제2호.
26. 채영복(2000), “EU반덤핑법”, 지산출판사.
27. 채영복(1999), “덤핑 결정기준으로서의 정상가격에 관한 법적 고찰”, 아주대학교 논문집.
28. 채 욱, “GATT 및 주요선진국의 반덤핑 제도와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방안”, 대외경제연구소.
29. 한국무역협회(2005. 7), 종합무역정보(국가통상정보).
30. 한상덕(2001), “도하개발아젠다의 출범에 따른 반덤핑협정 개정 대응방안”, 법무부 통상법률 42호.

[외국문헌]

1. Blonigen, Bruce A.(2000), “U.S. Antidumping filings and the Threat of Relation”, *Mimeo University of Oregon*.
2. Council Decision 93/350 of 8 June 1993, OJ(1993) L 144/21 as amended by Council Decision of 7 March 1994, OJ(1994) L 66/29.
3. Council Regulation 384/96.
4. D.W. Carlton, and J.M. Perloff(1994), *Modern Industrial Organization*, 2nd ed., Harper Collins, New York.
5. D. Salvatore(1993), *International Economics*, 4th ed., Macmillan New York.
6. Feinberg, Robert M. and Barry T. Hirsch(1989), “Industry Rent seeking and the Filing of Unfair Trade' Complaints”,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Vol.1.
7. Finger, J. Michael.(1982), “The Industry–Country Incidence of 'Less than Fair Value Case in US Import Trade”, *Quarterly Review of Economic*

*and Business* Vol. 21.

8. Frank Montag and Andre Fiebig(1996), [The Europe Union's Antidumping System] – Kluwer Law International, p.119.
9. Frusawa, Taiji, and Tomas J. Prusa(1996), “Antidumping Enforcement in a Reciprocal Model of Dumping: Theory and Evidence”, Third Annual Conference on: Empirical Investigations in International Trade, Purdue University.
10. G. Haberler(1936), *The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with Its Applications to Commercial Policy*.
11. Greg Mastel(1996), *American Trade Laws after the Uruguay Round* M.E. Sharpe, Inc.
12. Hansen, Wendy L.(1990), “The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and the Political of Protectionism”,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4.
13. Herander, Mark G. and J. Brad Schwartz(1984), “An empirical Test of the Impact of the Threat of US Trade Policy: the Case of Antidumping Duties”, *Southern Economic journal* 51.
14. Holems(1995), “Anti-Circumvention under the European Union's New Anti-Dumping Rules”, 29(3) *Journal of World Trade*.
15. J. Viner(1993), *Dumping : A Problem in International Trade*.
16. Krupp, Corinne(1994), “Antidumping Cases in the US Chemical Industry; A panel Data Approach”,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42.
17. Lichtenberg, Frank and Hong Tan, “An Industry-Level Analysis of Import Relief Petitions Filed by US Manufactures, 1995–1998”, In Hong Tan and Haruo Shimada(des.), *Troubled Industrie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New York : St. Marin's Press, 1994.
18. Sabry Faten(2000), “An Analysis of the Decision File, the Dumping Estimates, and the Outcome of Antidumping Petitions”, *International Trade Journal* 14.
19. Tokyo Electric Co. Ltd v Council, Cases 260/85 & 106/86 (1988)
20. P.R. Krugman, and M. Obstfeld(1994), *International Economics : Theory and Policy*, Harper Collins, New York.
21. Recited in J. F. Beseler, & A.N.(1986), WILLIAMS, *Anti-Dumping and Anti Subsidy Law : The European Communities*, Sweet & Maxwell.

22. S.W. Davies and A.J. McGuinness(1982), "Dumping at Less Than Marginal cost",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12.
23. W.J. Ethier(1982) "Dumping",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0.
24. WTO 반덤핑협정 제2.1조, 제2.2.1조, 제2.4조, 제 2.4.2조.

## Abstract

### A Study on EU Anti-dumping Law

Kim, Do-hyoung\*

This thesis is related with Anti-dumping law about Korea's export in EU. Indeed, Korea' export to EU market is how related to EU's Anti-dumping law this study was intended to reveal from a legal point of view.

For this purpose from EU's Anti-dumping law's institution at present to application historical channel was examined and is showed Anti-dumping law's application procedure briefly.

Throughout this study what we could get are EU's Anti-dumping law based on a statute, EU's Anti-dumping law's institution background and the law's application procedure & effects.

Key Words : EU, EU Anti-dumping law

---

\*Ph.D Candidate, Hongik University, Graduate School,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